

의안 번호	2403	<b>【울산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3. 31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3. 31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4. 14.(월)

## 2. 제안이유

-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구-경찰서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 ~ 제4조)
- 지원사업(안 제5조)
- 협력 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(안 제6조 ~ 안 제7조)

## 4. 근거법규

-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## 5. 검토의견

-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.
-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며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구-경찰서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 근거법규

##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**제2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경찰의 사무)**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가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.  
다만,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.

2. 자치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·교통·경비·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

가.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

- 1)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
- 2)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
- 3) 안전사고 및 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지원
- 4)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·학교폭력·성폭력 등의 예방
- 5)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·단속. 다만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.
- 6)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

나.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

- 1)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·단속
- 2)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·설치·관리

- 3)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
- 4)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
- 5) 통행 허가,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,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
- 6)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

다.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

라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

- 1)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
- 2) 가정폭력, 아동학대 범죄
- 3)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
- 4) 「형법」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에 관한 범죄
- 5)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
- 6) 가출인 및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

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